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0. 2.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년 9월 19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19년 9월 24일

라. 상정일자: 제21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19. 9. 2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정국장 김성영)

가. 제안이유

-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한 노동전문 민간기관(노동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3년
- 위탁사무내용
 - 노동자의 노동 여건 등 실태 파악
 -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 사업
 -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모집방법: 공개모집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임경태)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가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검토결과,

- 제출된 민간위탁 사무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민간위탁하여,
- 노동법률·교육 및 취업지원 등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향후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사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 위탁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능력, 재정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운영 실적의 엄격한 평가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47
----------	-----

제출연월일: 2019. 9.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민간위탁 목적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한 노동전문 민간기관(노동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함.

2. 민간위탁 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사무: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련 사무

사 업 명	주요 사업내용
① 노동법률 지원	○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산업재해 등 ○ 임금체불 방지 및 피해노동자 상담·구제 지원 ○ 노동조합설립 관련 법률상담 및 지원
② 노동자 교육 및 취업 지원	○ 시민대상 노동법률 및 노동인권 교육 ○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고용정보, 직업지도 ○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 취업촉진을 위한 사업
③ 노동자 문화·복지 운영	○ 문화 및 각종 여가활동 지원 등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운영
④ 시 노동권익센터와 협업 사업 발굴 및 강화	○ 시 노동인권센터장과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 간 협의체 구성·운영
⑤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 지역경제, 소규모사업장 종사자 등 실태조사
⑥ 시설관리·운영	○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시설 관리·운영

나. 위탁개요

- 위탁기간: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3년
- 위탁사무내용
 - 노동자의 노동 여건 등 실태 파악
 -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 사업
 -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개발
 -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모집방법: 공개모집

3.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19년 10월: 구의회 동의
- 2019년 10월: 일상감사 의뢰
- 2019년 10월: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19년 10~11월: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19년 11월: 위탁체 결정 및 협약체결(위탁기간: 3년)

4. 민간위탁 소요 예산(2019년 기준안): 60,000천원

구 분	소 계	인건비	사업비	비고
노동자종합 지원센터 운영	60,000	31,000	29,000	11월 ~ 12월

5.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

- 민간 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한 서비스의 질 개선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노동관련 전문기관 또는 노동조합 등의 오랜 기간 축적된 지식·능력 활용

- 노동 관련 민간 부문 네트워크 활성화
 - 노동단체·비영리법인 등 민간 부문 주도로 기존에 형성된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므로 직접적 서비스 공급에 비해 행정비용 절감 효과 및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노동복지 및 권익 증진

6. 법적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